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는 법문 정비〉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114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은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시제 수정(안 제176조)	2
2. 문법적 오류 수정(안 제201조제2항)	3
3. 관계기관 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준호의원 등 13명
2. 제 안 일 : 2024. 12. 30.
3. 회 부 일 : 2024.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함.

현행법 제176조 중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01조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와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 및 제201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시제 수정(안 제176조)

개정안은 통지 없이 압류 등(압류·가압류·가처분)의 시효중단 효력을 얻는 대상을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76조).

현 행	개 정 안
第176條(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中斷) 押留, 假押留 및 假處分은 時效의 利益을 받은 者에 對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通知한 後가 아니면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¹⁾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현행법의 법문인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시사하는데, 제176조의 “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바꾸려는 개정안은 타당함.

법문의 내용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²⁾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개정하고자 한 바 있음.

1)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의안번호 202025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019. 5. 9. (임기만료폐기)

2. 문법적 오류 수정(안 제201조제2항)

개정안은 악의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지 못하여 그 대가를 보상하는 경우를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서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第201條(占有者와 果實) ① (생 략) ³⁾ ② 惡意의 占有者는 收取한 果實을 返還하여야 하며 消費하였거나 過失로 因하여 毀損 또는 收取하지 못한 境遇에는 그 果實의 代價를 補償하여야 한다. ③ (생 략)	第201條(占有者와 果實) ① (현행과 같음)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果實)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현행 법문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지 못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현 행	개 정 안
第176條(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中斷) 押留, 假押留 및 假處分은 時效의 利益을 받은 者에 對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通知한 後가 아니면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제176조(압류·가압류·가처분과 소멸시효 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얻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이 있음을 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다.

- 3)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못한 경우”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훼손하지 못한 경우 (훼손되지 않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과실로 인하여 훼손한 경우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로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은 타당함.

법문의 내용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⁴⁾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개정하고자 한 바 있음.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은 법률 표현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 오탈자 정비 등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임.

법제처는 현행 「민법」에서 쓰이는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에 이견이 없으나, 개정 대상 조문에서 일부

4) 의안번호 20219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019. 8. 9. (임기만료폐기)

현행	개정안
第201條(占有者와果實) ②惡意의占有者는收取한果實을返還하여야하며消費하였거나過失로因하여毀損또는收取하지못한境遇에는그果實의代價를補償하여야한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果實)] ② 악의의 점유자는 거두어들인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과실을 소비했거나 과실(過失)로 훼손했거나 거두어들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補償)해야 한다.

용어만 개정되어 다른 용어 및 문장에는 정비대상 표현 등이 남아 있게 되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현행	개정안	법제처 의견(안)
第176條(押留, 假押留, 假處分과時效中斷) 押留, 假押留및假處分은時效의利益을받은者에對하여하지아니한때에는이를그에게通知한後가아니면時效中斷의效力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이 있음을 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第201條(占有者와 果實) ①善意의占有者는占有物의果實을取得한다. ②惡意의占有者는收取한果實을返還하여야하며消費하였거나過失로因하여毀損또는收取하지못한境遇에는그果實의代價를補償하여야한다. ③前項의規定은暴力또는隱秘에依한占有者에準用한다.	第201條(占有者와 果實) ① (현행과 같음)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果實)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果實) 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果實)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훼손하였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폭력으로 점유하거나 은밀히 점유한 자에게 준용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문의 의미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개정 취지에는 찬성하나, 개정 대상 조항들이 현재 실무상 본래 취지에 맞게 해석되고 있고, 일부 조문 자구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것보다는 민법 전체의 한글화 추진시 일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4